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보고자 : 전문위원 장홍용)

1. 제안경위

- 제안자 : 최은하 의원 외 14명
- 제안일 : 2025. 11. 14.
- 회부일 : 2025. 11. 18. (의안번호 : 25-141)

2. 제안이유

-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편견으로 생활편의시설 이용에 제한을 받는 장애인들을 위하여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개선 및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 규정

(안 제1조 ~안 제3조)

나. 보조견 출입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안 제4조)

다. 사업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안 제6조)

4. 참고사항

- 관계법규
 - 「장애인복지법」 제40조(장애인 보조건의 훈련·보급 지원 등), 제40조의2(장애인 보조건 인식개선), 제90조(과태료)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3조의2(장애인 보조건 인식개선 홍보사업의 내용 등)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장애인 보조건표지 발급대상), 제30조의2(장애인 보조건 동반출입 거부 사유)
-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 입법예고 : 2025. 11. 7.~11. 12.(제출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최은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복지도시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장애인 보조건에 대한 편견으로 생활편의시설 이용에 제한을 받는 장애인들을 위하여 장애인 보조건에 대한 인식개선 및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 안 제4조에서는 보조건 출입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을,
 -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사업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총 6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살펴보면,
 -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 및 훈련견은 대중교통,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출입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으나, 현재까지도 거부당하는 사례가 있음. 이에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최근 5년간 보조견 출입거부 사례

연도	시·도	과태료 (천원)	위반장소	보조견 유형
2020	경기	1,000	식품접객업소	시각
	경기	800	식품접객업소	시각
	서울	2,000	대형마트	시각
2021	서울	2,000	식품접객업소	시각
2022	서울	800	식품접객업소	시각
2023	충남	1,000	숙박시설	청각
	부산	1,000	식품접객업소	뇌전증
2024	충남	1,000	식품접객업소	시각
	강원	1,000	숙박시설	시각
	충남	1,000	식품접객업소	청각
	충남	1,000	숙박시설	청각
	대구	1,000	식품접객업소	청각
	부산	1,000	식품접객업소	시각
	전남	2,000	식품접객업소	시각
2025. 5	인천	1,000	대중교통	시각
	대전	1,600	식품접객업소	청각
	부산	2,000	식품접객업소	청각
	부산	1,000	식품접객업소	시각

* 보건복지부 국회제출자료

○ 종합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40조 및 제90조에서 장애인 보조건의 출입 보장을 명시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보조건의 출입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 또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장애인 보조건의 일상생활의 출입 보장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으며, 공공장소 등에서 장애인 보조건 동반 출입에 대한 인식개선 효과가 있으며 장애인의 이동 범위가 확대되고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여 사회참여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본 조례안은 시의적절하고 타당하다고 사료됨.

- 아울러 장애인 보조건 출입 대상뿐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홍보를 강화하고 각종 안전교육과 음식점 위생교육에 ‘보조건 동반 출입 안내’ 내용을 포함해 교육효과를 높이고 ‘보조건 환영’ 스티커를 제작·배포해 버스 출입문, 음식점, 카페 입구 등에 부착하는 등 행정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담당부서	담당과장	담당팀장
장애인복지과	김희선 (8880)	김지영 (8881)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제4조(사업) 구청장은 보조견 출입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조견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2. ‘보조견 출입가능’ 픽토그램(pictogram) 보급

3. 대중교통수단,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을 대상으로 한 보조견 출입 및 대응에 관한 교육

4. 그 밖에 보조견 출입보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2항 제2호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 작성 생략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복지동행국 장애인복지과 신아름
연 락 처	02-3153-8879

1.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

제40조(장애인 보조견의 훈련·보급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을 보조할 장애인 보조견(補助犬)의 훈련·보급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하여 장애인 보조견표지(이하 “보조견표지”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③ 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보조견의 훈련·보급을 위하여 전문훈련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⑤ 보조견표지의 발급대상, 발급절차 및 전문훈련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의2(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0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홍보사업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9조의3제10항에 따른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3조의2(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홍보사업의 내용 등) ①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홍보사업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보조견(補助犬)의 필요성에 관한 사항
2.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거부 금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홍보사업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홍보영상 및 홍보간행물의 제작·배포
2. 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교육
3. 그 밖에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홍보사업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홍보사업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장애인 보조견표지 발급대상) 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표지(이하 “보조견표지”라 한다)의 발급대상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보조견 전문훈련기관(이하 “전문훈련기관”이라 한다)에서 훈련 중이거나 훈련을 이수한 장애인 보조견으로 한다.

제30조(보조견표지 발급 등) ① 제29조에 따른 전문훈련기관의 장은 해당 훈련기관에서 훈련 중이거나 훈련을 이수한 장애인 보조견에 대하여 보조견표지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전문훈련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보조견표지의 발급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애인 보조견의 전신사진 1장
2. 장애인 보조견이 훈련 중이거나 훈련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조견표지의 발급을 신청받으면 신청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별표 2에 따른 보조견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0조의2(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거부 사유) 법 제40조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의료법」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무균실, 수술실 등의 감염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조리장·보관시설(참고)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접객업 영업소의 조리장·보관시설(참고)의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관내 장애인 현황

2025. 5 현재

등급	계	시각	청각	뇌전증	지체
계	8,240	1,415	1,936	38	4,851
심한	1,672	323	377	17	955
심하지 않은	6,568	1,092	1,559	21	3,896

3. 타 자치단체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사업 사례 (동작구)

<p><동작구 안내견 픽토그램 스티커> (점자포함)</p>	<p><동작구 안내견 출입 홍보 포스터></p>

-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임으로 스티커에 점자를 포함하여 알아볼 수 있도록 함